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명칭 변경 및 비용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79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7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7. 31.
- (3) 회 부 일 : 2025. 8.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작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분만·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명칭을 ‘장애친화 여성 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업무수행 및 시설·인력·장비 등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의3(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 ----- ----- -----여성건강의학과-----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② -----여성건강의학과-----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설>

-----.

③ -----

-----여성건강
의학과-----

-----.
-----.

1. ~ 3. (현행과 같음)

④ -----여
성건강의학과-----

-----.

제22조(비용 지원)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의료기관의 업무수행 및

② (생 략)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장애인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 (생 략)	<u>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u>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청문) ----- ----- ----- -----. 1. ----- -----<u>여성건강의학과</u>----- ----- 2.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1)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있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 개요).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장애인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현재 전국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개소(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5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2024년 말 기준 누적 이용 건수는 8,666건임.²⁾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소재지)	비고
1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종로구)	상급종합병원
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부산진구)	상급종합병원
3	전남대학교병원(광주 동구)	상급종합병원
4	울산대학교병원(울산 동구)	상급종합병원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 고양시)	상급종합병원
6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충북 충주시)	종합병원
7	예수병원(전북 전주시)	종합병원
8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경북 구미시)	종합병원
9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서울 양천구)	종합병원
10	성애병원(서울 영등포구)	종합병원

자료: 보건복지부

- 장애친화 산부인과에는 최초 지정 시 시설·장비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운영비(인건비, 사업비)로 매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함.³⁾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부인과(진료과목코드: 10)를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건수를 구분하여 2024년 기준으로 추출한 수치로, 동일인이 중복 이용한 경우도 포함되어 집계된 것임.

3) 국비 50%, 지방비 50%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관련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구분	지원 내용
시설·장비비 (1차년도: 3억 5,000만원)	• 장애친화 진료실, 입원실, 분만실, 수유실 등 시설 개보수 또는 증축 및 장애친화 편의장비 등 구매 •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해 1회 지급
운영비 (2차년도 이후: 1억 4,000만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선정된 이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임신·출산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친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명칭을 보다 포괄적인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그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신체 특성과 생애주기별 요구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은 개정 실익과 관련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는 이미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1542-307)’ 중 내역사업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을 통해, 최초 지정 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원과 이후 매년 운영비 1억 4,0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음.

□ 둘째,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명칭을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⁴⁾

진료과목 등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를 준용하고 있음.⁵⁾

4)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000호)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864호)이 계류 중임.

- 「의료법」 제43조 및 제7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전문의가 표시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는 산부인과를 포함하여 총 26개로,⁶⁾

- 「의료법」 제3조의37)에서는 이 중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장애인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치과병·의원 및 한방병·의원을 제외한 것임.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7조(전문의)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12. 20.>

④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 :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정신병원이나 의원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④ (생략)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7)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

인과 등 일부 과목만을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명칭 변경) 진료과목 등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건강권법」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또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 등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제2206000호),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제2211864호)

□ (지원 근거 명시)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다만,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되는 경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에 따라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비용지원에 대한 별도 근거를 명시할 실익은 낮다고 판단됨.

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나. 관계 기관

기관명	의견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시 여성의 임신·분만·출산에 국한된 진료과목이라는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 생애 주기에 걸친 건강관리 전문과목으로의 국민 인식 제고 및 여성의 진료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u>전문적 자격 명칭은 의료 전반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진료과목 명칭은 「전문직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직의 전문과목)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개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u>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임신·분만·출산 및 여성 질환 관련 진료를 포함하는 의미이며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u>‘장애친화 산부인과’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이므로 기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함.</u>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대상자와 제공 서비스가 명확히 드러나 장애 여성과 보호자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명칭임. ‘여성건강의학과’ 용어 변경 시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사회적 인식 구축 초기 단계에서의 사회적 신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지원이라는 정책 핵심 목적이 희석될 수 있으며, <u>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진료를 제공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u> 또한 이로 인해 간판·안내시스템·운영체계 정비 등 현장 혼선 및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울산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여성건강의학과’ 용어 변경 시 ‘가정의학과(건강관리)’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명칭 변경 재검토가 필요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성건강의학과’ 용어 변경은 포괄적인 접근으로 여성 장애인의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되나, <u>아직 사회 전반에 충분히 통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대상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사용할 경우 특수한 명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도입될 필요성 있음.</u>

기관명	의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비용 지원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여성건강의학과’ 용어 변경은 현장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명칭 변경 동시 진행이 필요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명칭 변경을 계기로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명칭 변경 취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진료 접근성 및 인지도를 높여야 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 지정 지원
 -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및 생애주기별 여성질환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출산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정기준) 시설, 장비, 인력 등 기준 충족 필요

시설 기준	▪ 주요시설(11):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시설별 이동 공간(1.4m x 1.4m), 장비 배치 기준, 최소 유효폭(1.2m) 등 명시 ①외래진료·처치실 ②진통실 ③분만실 ④회복실 ⑤입원실 ⑥화장실 ⑦신생아실 ⑧수유실, ⑨이동통로 ⑩보호자실 ▪ 편의시설(10):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①접근로 ②주차구역 ③출입구 ④복도 ⑤승강기경사로 등 ⑥화장실 ⑦점자블록 ⑧사청각장애인 안내설비 ⑨경보·파난설비 ▪ 권장시설(4): 「장애인등 편의법」 세부기준 준용(욕실, 샤워실, 접수대, 음료대)
장비 기준	▪ 10종(의료 5, 편의 5):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장비별 사양, 배치장소 등 규정 * (의료) 진찰대, 초음파 침대, 슬라이딩보드, 흉부 X-ray, 전동침대, (편의) 휠체어체중계, 특수휠체어 등
인력 기준	▪ 필수인력(19): 겸직 가능하며, 수어통역사는 위탁 허용 * 전문의 4, 간호사 6,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3, 원무·약무·행정·방사선·임상병리 5, 수어통역사 1
운영 기준	▪ ①전용 사이트 운영 ② 수어통역 제공 ③예약, 상담, 진료 시 필요한 편의 제공

□ 지원내용 ('25년 기준)

- (기 지정기관)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14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보건복지부